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6고합10021 군인등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최순호(기소), 정태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광현
판 결 선 고 2026.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¹⁾

피고인은 해병대 1사단 2여단 B대대 소속으로, 같은 부대 소속인 피해자 C(가명, 남, 19세), 피해자 D(가명, 남, 19세)의 선임 병사이다.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5. 11. 26. 10:00~14: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해병대 1사단 2여단 B대대 지휘통제실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5. 11. 29. 22:00경부터 다음 달 02:00경 사이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해병대 1사단 2여단 B대대 지휘통제실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5. 12. 15. 22:00경부터 다음 달 02:00경 사이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해병대 1사단 2여단 B대대 지휘통제실에서 근무를 마치고 그곳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지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5. 12. 16. 22:00경부터 다음 달 02:00경 사이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해병대 1사단 2여단 B대대 지휘통제실에서 근무를 마치고 그곳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지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5. 12. 17. 22:00경부터 다음 달 02:00경 사이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해병대 1사단 2여단 B대대 지휘통제실에서 근무를 마치고 그곳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지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5. 12. 18. 02: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해병대 1사단 2여단 B대



대 건물 내 계단에서 피해자와 함께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던 중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팔뚝 부분을 주무르듯 만지고,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진 후, 계속해서 엉덩이를 툭툭 치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5. 12. 8. 18:1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해병대 1사단 2여단 B대대 체력단련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찌르고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 치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5. 12. 12. 18:4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해병대 1사단 2여단 B대대 체력단련실에서 상체를 숙여 바벨을 들어 올리는 운동(바벨로우)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를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복무확인서(C, D), 피의자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2025. 12. 18.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둢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향후 자신의 직업 및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에서 선임병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군대 내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해랑 _____

 판사 전지은 _____

 판사 김수빈 _____